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(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532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3년 4월 27일

국토교통부 장관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	면적(km ²)	비 고
합 계			0.77	
서울특별시	용산구	이촌동	0.05	용산
		한강로 1가	0.05	정비창
		한강로 2가	0.04	개발사업
		한강로 3가	0.61	예정지 및
		용산동 3가	0.01	인근지역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3년 5월 20일부터 2024년 5월 19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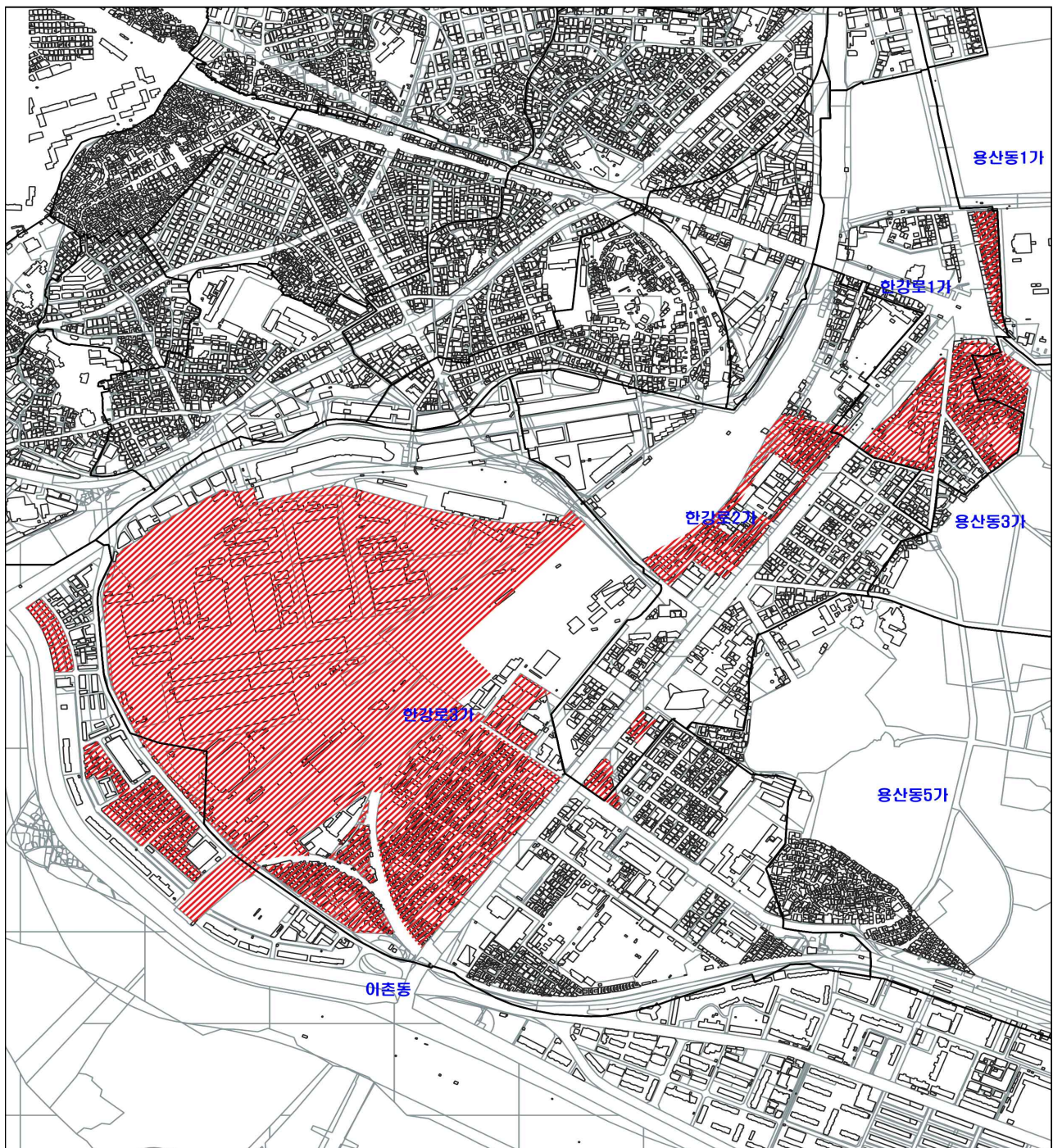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m ² 초과
	상업지역	15m ² 초과
	공업지역	15m ² 초과
	녹지지역	20m ²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m ²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m ² 초과
	임 야	1,000m ²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m ²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〈 서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〉



범례

- 토지거래허가구역
- 읍면동경계

Scale = 1:25000

0 250 500 750 m